

의안번호	제820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2025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계획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25년 1월 10일

2025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계획안

의안 번호	820
----------	-----

제출연월일 : 2025년 1월 10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기관별 출연개요

연번	대상기관	출연목적 및 필요성	출연금액 (단위:천원)	관계법령 (출연근거)
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19.6월)에 따라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해 특구 육성사업 국비 대응 지방비 매칭 ○ 공공연구성과 확산, 기술 사업화 촉진을 통한 창업지원 및 투자연계로 기업성장 및 지역경쟁력 강화	900,000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3. 의안전문 : 붙임

4. 관계법령 발체 : 붙임

1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과학기술정책과 신성장정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혜란	김영옥	김정희	8415

기 관 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정희권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도룡동 4-27) ○ 규 모 : 10본부(10실, 17팀), 1부(1팀), 현원 총 162명 ○ 주된사업 : 연구개발특구 육성, 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900백만원(도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24년 예산액	2025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충북청주 강소연구 개발특구 육성사업	'25. 3. ~'26. 3.	360	900	3,600	1,800	900	900
	※ 국비, 시군비는 재단으로 직접지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19.6월) 및 2단계 특화발전 지원 확정('24.6월)에 따라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한 육성사업 추진 국비 대응 지방비 매칭으로 반드시 지원 필요 * 과기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1036호('24.4.23.) / 총 사업비 대비 지방비 50%, 국고 대비 100% 매칭 ○ 강소특구 육성 사업비를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강소특구육성사업 2단계('25.~'29.) 특화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출연 필요							
근거·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지도감독 부서·인건 (중 평)	○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19.6월)에 따라, 창업·기업성장 지원 및 특구 활성화를 통해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 ○ 특구 중심의 ‘공공기술 발굴·이전→사업화→기업성장’의 기술사업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충북의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을 선도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 건의드릴							
첨부자료	1.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 3.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등 기타자료 4. 관계법령 발췌							

1-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1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2019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충북을 포함한 6개 지역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현재 총 14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 지자체 협약을 통해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19) 청주, 안산, 진주, 창원, 포항, 김해 / ('20) 구미, 울산(울주), 군산, 나주, 서울(홍릉), 천안(아산) / ('22) 인천(서구), 춘천
-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충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 일부를 기술사업화 배후공간으로 구성하여, 총면적 2.85km²('23년, 2.2km²→2.85km² 면적확장)로 스마트IT부품시스템 분야를 특화하여 강소특구를 육성 중임
- 강소특구 1단계('20.~'24.) 운영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및 2단계('25.~'29.) 특화발전 추진계획 평가를 통해 후속 특화발전 지원이 확정('24.6월)되며 강소특구 2단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129호(2024.6.11.)
-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역 주도형 소규모·고밀도 R&D특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강소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 총 사업비 대비 50%, 국고 대비 100%의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1036호(2024.4.23.)
- 강소특구 육성사업의 1단계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특화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국비 매칭에 따른 도비 출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 출연금 검토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액	2024 예산액(최종) (C)	2025 예산안			
			기관요구액 (A)	실과검토액 (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액 (B-C)
충북청주 강소연구 개발특구 육성사업	450	360	900	900	-	540

※ 관련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1036호(2024.4.23.)

- 총 사업비 대비 50%, 국고 대비 100%

1-② 출연기관 현황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설립근거	법률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전화번호 : 042-865-8800		
					www.innopolis.or.kr		
주요연혁	◦'05. 9.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설립 ◦'12. 7. : 특구법 개정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 재단 출범(명칭변경) ◦'19. 6. : 강소특구(청주,안산,진주,창원,포항,김해) 지정 ◦'20. 8. : 강소특구(구미,울산,군산,나주,홍릉,천안) 지정 ◦'22. 6. : 강소특구(인천서구, 강원춘천) 지정			기관형태 (출자, 출연)	정부출연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원현황 (24.12.31.기준)	계		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162명		1명	150명	11명		
임 원 (24.12.31.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의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정○○	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2024.07.03.~2027.07.02. (3년)		
	비상임이사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		당연직		
	비상임이사	강○○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당연직		
	비상임이사	손○○	경북대 교수(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		2022.12.29.~2024.12.28.		
	비상임이사	김○○	동서대학교 총괄부총장		2022.12.29.~2024.12.28.		
	비상임이사	부○○	건국대학교 교수		2022.12.29.~2024.12.28.		
	비상임이사	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2023.08.07.~2026.08.06.		
	비상임이사	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2023.08.07.~2026.08.06.		
	비상임이사	이○○	법률사무소크라온 대표변호사		2023.11.07.~2025.11.06.		
주요기능	○ 기술사업화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1. 특구육성사업 2. 제도지원 3. 특구개발 관리 4. 특구 인프라 지원						
자본금 (단위: 백만원)		41,263 (‘24.12.31.기준)			출자·출연액 (단위: 백만원)	26,811(출연) (‘24.12.31.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재무현황 (백만원) ※'24.12.31.기준	자산	78,444
	예산액	156,345	189,017	141,574		부채	13,324
	지자체 지원액 (출연금)	900	900	720		자본 (자산-부채)	65,120
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24.12.31.기 준	총수익			총비용		영업이익	
	234,058			235,873		△1,815	

1-③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과학기술정책과 신성장정책팀		출연	900백만원(도비)

□ 목적 및 필요성

- 강소특구 공공연구기관·대학 등 공공기술 이전을 통한 연구성과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으로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
- 충북 청주 강소특구 내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창업 촉진 및 유관 기관 연계 투자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한 창업 활성화

□ 출연개요

- 사 업 명 : 충북 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 기 간 : 2025. 3. ~ 2026. 3.
- 출 연 액 : 900백만원(도비)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25.기준보조율)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계	23,720	7,200	4,800	2,900	2,900	2,320	3,600	’25.부터
국 비(50%)	17,400	6,000	4,000	2,000	2,000	1,600	1,800	지방비 매칭
도 비(25%)	3,160	600	400	450	450	360	900	상향 (국고의
시군비(25%)	3,160	600	400	450	450	360	900	100% 매칭)

- 사업내용 : 기술이전사업화 지원(R&BD), 강소특구 간 연계 협력 지원, 기술 발굴 및 창업 지원, 지역 특화기업 성장지원 등 강소특구 육성사업

□ 기대효과

- 공공 연구성과의 확산과 기술사업화 촉진, 특구 내 인프라 활용을 통해 기술 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 성과 창출
- R&D-사업화-재투자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14개 특구의 사업계획, 예산 및 핵심성과 지표가 유사하여 출연 의무 불이행시 사업 운영 불가로 성과지표 미달성, 기업 지원 중단으로 인한 특구별 평가 및 강소특구 2단계 사업에 불이익 우려

참고 1

'25년도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구성(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수행주체	예 산	세부내용
합 계			3,600	
간 접 비			(지)100	지방비 수탁에 따른 특구재단 간접비
직 접 비			3,500	육성사업 운영 및 지원
공통수단 지원	소 계		950	
	기술이전 R&BD	특구재단	400	· 기술이전R&BD(200×2개) 400 - 기술이전 기업 및 연구소기업 대상, 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협력 Value-up R&BD	특구재단	500	· 협력 Value-up R&BD(100×5개) 500 - 2개이상 특구 내 기업이 협력한 기술이전 기업 및 연구소 기업 대상, 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이노테크 플러스	특구재단	50	· 강소특구 연계협력 지원 50 - 2개이상 특구간 연계프로그램(사업화 기획 등) 지원 등
특화수단 지원	소 계		2,550	
	이노테크 발굴 및 창업지원	기술핵심 기관 (충북대)	850	· 연구소 기업 발굴 및 육성 140 - 연구소 기업 발굴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분기별 4건 x 10 = 40 - 연구소 기업 육성(R&BD전략 수립 및 지원사업 연계) ⇒ 10개 社(기존 연구소 기업 포함) x 10 = 100 · 우수기술 발굴 및 특허 전략 수립 지원 110 - 우수 연구자 발굴 및 특허 전략 수립 지원 ⇒ 6인 x 10 = 60 - 우수 기술 발굴 ⇒ 1건 x 50 = 50 · 기술설명회 개최 및 기술 마케팅 운영 100 - 분야별 기술설명회 개최 ⇒ 분기별 4회 x 15 = 60 - 특화분야 기술 및 소액기술 마케팅 운영 ⇒ 1회 x 40 = 40 · 교육, 아이템 검증, 기술 멘토링 및 제품화 지원 200 - 교육 및 아이템 검증 ⇒ 4회 x 20 = 80 - 기술멘토링 및 제품화지원 ⇒ 10개 社 x 12 = 120 · 연합 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외부 경진대회 참가 120 - 창업경진대회 개최 ⇒ 2회 x 30 = 60 - 외부경진대회 참가 ⇒ 2회 x 30 = 60 · IR 데모데이 개최 및 IR 멘토링 100 - IR 데모데이 및 멘토링 ⇒ 20개 社 x 5 = 100 · 글로벌 IR 대회 참가 80 - 글로벌 IR 대회 참가 ⇒ 4개 社 x 20 = 80
	이노테크 기업 육성	기술핵심 기관 (충북대)	(지)1,700	· 대중소 기업 연계협력 통합 플랫폼 구축 500 - 대중소 기업 수요기반 기술사업화 지원 ⇒ 4건 x 80 = 320 - 혁신기업 발굴 및 비즈니스 매칭 ⇒ 8건 x 10 = 80 - 지·산·학·연 혁신 네트워크 운영 ⇒ 10건 x 10 = 100 · 글로벌 진출 기술사업화 우수기업 육성 200

구 분		수행주체	예 산	세부내용
				- 글로벌 진출 실증화 지원 ⇒ 3건 x 20 = 60 - 글로벌 진출 사업화 지원 ⇒ 7건 x 20 = 140 • 특구 내 강소기업 집중 육성 900 - 전주기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10건 x 50 = 500 - 글로벌 진출 네트워크(전시회, 포럼 등) 지원 ⇒ 3건 x 50 = 150 - 연구소기업 전용 프로그램 운영 ⇒ 5건 x 50 = 250 • 특화분야 연구 협의회 구성 및 지원 100 * 혁신네트워크 : 연구회, 혁신기관 협의체, 기업생태계 협의체 * 특화분야 : 이차전지, 양자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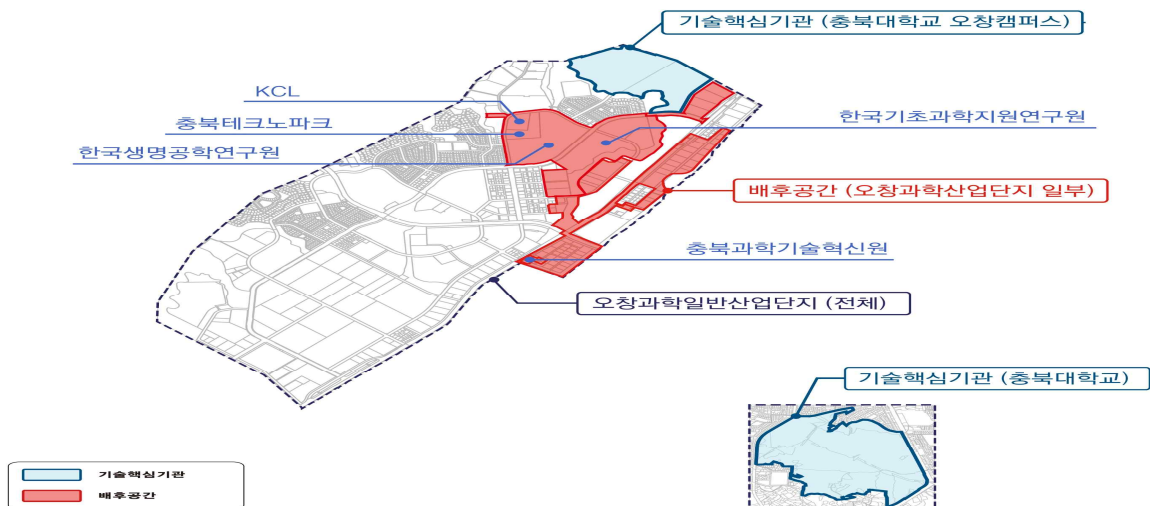
참고 2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현황

□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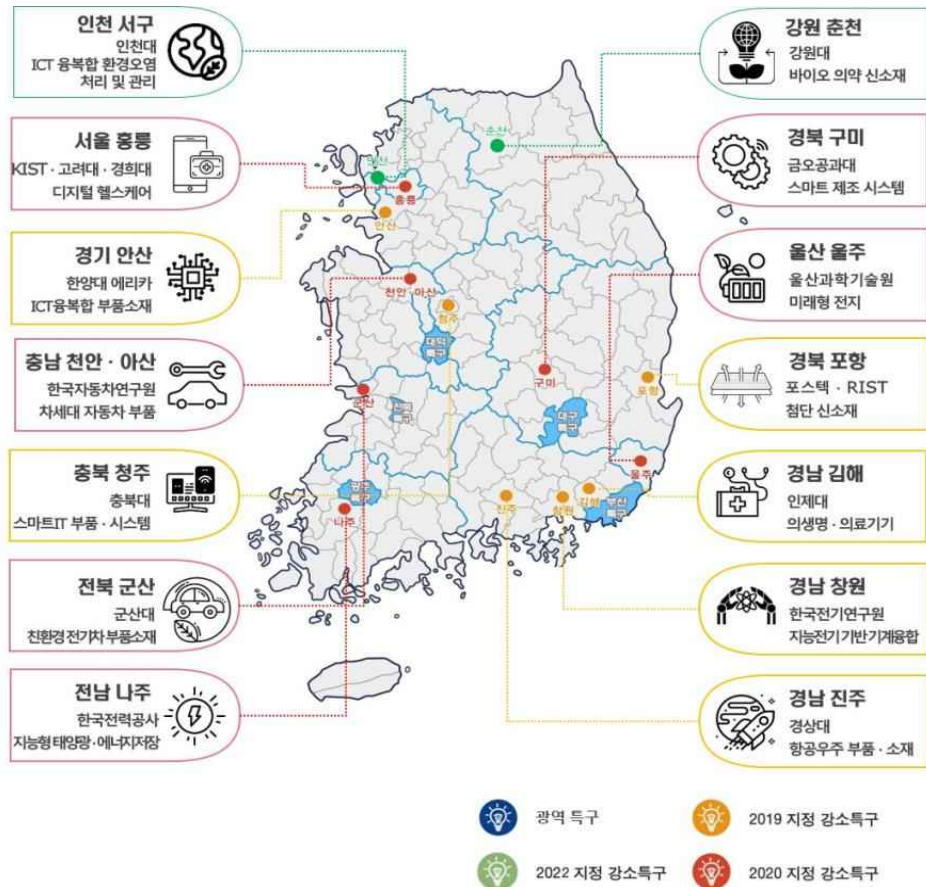
- (특화분야) 스마트 IT 부품 및 시스템
- (위 치) 충북대 본교 및 오창캠퍼스, 오창과학산단 일부
- (사업기간) 1단계 2020 ~ 2024년(5년) *특구 선정 : '19. 6.
2단계 2025 ~ 2029년(5년) *2단계 평가 적정 : '24. 6.
- (사업예산) 237.2억원(국174, 지63.2) *25년 36억원(국18, 도9, 청주시9)
- (면 적) 2.85km²(기술핵심기관 1.41km², 배후공간 1.44km²)
※ 지정 당시 : 2.2km²('19.6.) → 면적 확장 : 2.85km²('23.2. / 배후공간 0.65km² ↑)
- (관리권자/관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산·학·연 인프라) 대학 1개, 정부출연연 2개, 혁신기관 5개, 기업 254개
 - 기술핵심기관(대학) : 충북대
 - 정부출연기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기타혁신기관 :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FITI시험연구원
 - 기업수 : 총 254개 기업 / 특화기업 126개
- (사업내용) 공공연구기관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통한 기술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
- (지정혜택)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등
 - R&BD지원,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촉진 등(특구 당 연 18억원 정도 국비)
 -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의 법인세(3년간 100%, 2년간 50%), 재산세(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등

□ 위치도 및 지형도면



참고 3

전국 강소특구 지정현황



지정시기	지역(기술핵심기관)	면적	입주현황(개)	특화분야
'19년 지정 ('19.6.)	① 안산(한양대 에리카)	1.73km ²	기업(312), 공공연(3), 대학(1)	ICT 융복합 부품소재
	② 김해(인제대)	1.13km ²	기업(83), 공공연(1), 대학(1)	의생명·의료기기
	③ 진주(경상대)	2.17km ²	기업(247), 공공연(2), 대학(1)	항공우주 부품·소재
	④ 창원(한국전기연구원)	0.65km ²	기업(20), 공공연(1)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⑤ 포항(포스텍, RIST)	2.72km ²	기업(193), 공공연(8), 대학(1)	첨단 신소재
	⑥ 청주(충북대)	2.85km ²	기업(254), 공공연(7), 대학(1)	스마트IT 부품·시스템
'20년 지정 ('20.8.)	⑦ 구미(금오공과대)	2.57km ²	기업(303), 공공연(1), 대학(1)	스마트 제조 시스템
	⑧ 서울(홍릉) (KIST, 고려대, 경희대)	1.38km ²	기업(276), 공공연(1), 대학(2)	디지털 헬스케어
	⑨ 울산(울주)(UNIST)	3.01km ²	기업(142), 대학(1)	미래형 전지
	⑩ 나주(한국전력공사)	1.69km ²	기업(195), 공공연(2)	지능형 태양광·에너지 저장
	⑪ 군산(군산대)	2.70km ²	기업(127), 공공연(4), 대학(1)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⑫ 천안·아산 (한국자동차연구원)	1.32km ²	기업(102), 공공연(1)	차세대 자동차 부품
'22년 지정 ('22.6.)	⑬ 춘천(강원대)	1.86km ²	기업(58), 공공연(4), 대학(1)	바이오 의약 신소재
	⑭ 인천(서구)(인천대)	2.22km ²	기업(124), 공공연(4), 대학(1)	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

참고 4

강소특구 종합평가 실시 및 특화발전 추진계획 관련 공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지원과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강소특구 종합평가 실시 알림 및 특화발전 추진계획서 제출 요청

1. 귀 기관의 강소특구의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특구별 성과평가)

나. 지역과학기술진흥과-1028('24.4.23., 제21회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결과 보고)

3.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이후 5년이 도래한 6개 특구의 그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종합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 장소 : 2024.5.3.(금) 13:00 ~ 17:30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노폴리스홀(2층)

나. 평가 대상 : '19년 지정 강소특구'

* 경남 김해·진주·창원, 경북 포항, 경기 안산, 충북 청주

다. 평가 방법 : 발표 평가

라. 제출 대상 자료 : 특화발전 추진계획서 및 증빙자료

마. 제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기획실

바. 제출 기한 : 2024.4.30.(화)

붙임 1. 강소특구 종합평가 실시계획(안) 1부.

2. 강소특구 종합평가 세부일정 1부. 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지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지원과

과학기술정책지원과

수신자. 경기도지사, 안산시장, 한양대학교총장, 경상남도지사, 김해시장, 창원시장, 창원시장, 인제대학교총장, 경상국립대학교총장, 한국전기연구원장, 경상북도지사, 포항시장, 군위시장, 경북대학교총장,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 충북대학교총장,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주무관 이남현 사무관 최문보라 지역과학기술 진흥 2024. 4. 23.

합조자 진흥과장 고원호

시행 지역과학기술진흥과-1036 (2024. 4. 23.) 접수 과학기술정책과-3040 (2024. 4. 23.)

우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3-6층 (여진동) / http://www.msit.go.kr

전화번호 044-202-4749 팩스번호 061-202-6027 / tolata11@korea.kr / 비공개

생각은 창의적으로, 행동은 적극적으로!

강소특구 특화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평가 실시계획(안)

2024.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지원과

I 개요

□ 평가의 목적 및 근거

- (목적) 강소특구 1단계 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반을 바탕으로 후속 특화발전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단계 지원 여부를 결정
- 지자체(광역시·도)가 1단계 기반 조성 성과 및 2단계 특화발전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특화발전 단계 연속 지원불가
- ※ 단, 지자체 요청이 있는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차년도 특화발전 사업(5년)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참고 : 1차 적정성 재검토 결과 요약>

- 1차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0~21) 결과, 사업규모 및 기간을 축소하고, 5년 후 성과를 평가하여 후속지원 여부 판단 결론
- 지원규모(국비 기준) : 60억원 → 20억원
- 사업기간 : 계속 → 5년후 성과평가에 따라 재검토 / 5년차 이후 졸업제 검토 추진

- (추진근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제7조의2 및 특구법 시행령 제12조의2
- 특구법 제7조의2(특구별 성과평가):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특구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2조의2(특구별 성과평가):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별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참고 : 강소특구 사업 모델 개편 방향(안) >

- ▶ (강소특구 사업 체계 완성) 강소특구 지정 이후 자립까지 최대 10년간의 단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혁신 클러스터 성장 경로를 마련
- ▶ (성과 관리 강화) 1단계 기반 조성의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우수한 강소특구에 대해서만 2단계 특화 발전 지원 추진

예비 강소특구	강소특구 지원		자립형 강소특구
	1단계: 기반조성(5년)	2단계: 특화발전(5년)	
희망지역 대상 적정성 검토(6개월)	지역 공공기관 사업화 협력 네트워크 조성	특화 강화 지역 자율성 확대 인센티브 제공	(중앙) 제도적 지원 (지자체) 자율적 육성
	※ 국비: 60-40-20-20-20억 지방비: 국비의40%	※ 국비: 20-20-20-20-20억 지방비: 국비의100%	※ 지방비 민간자본으로 운영 중앙은 필요시 투융자 지원

참고 5

강소특구 특화발전 추진계획서 제출 공문



충 청 북 도



수신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경유)

제목 강소특구 특화발전 추진계획서 제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1036(2024. 4. 23.)호와 관련됩니다.
- 강소연구개발특구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발전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충북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발전 추진계획서 1부. 끝.

충 청 북 도 지 사

주무관: 행정과, 인사장정: 행정과, 과학기술정책: 2024. 6. 1.
합조자: 행정과, 인사장정: 행정과, 과학기술정책: 2024. 6. 1.
시청: 과학기술정책과-3266, 접수: 2024. 4. 30.
우: 2832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15, 8층 (충북도청 별관) / www.chungbuk.go.kr
전화번호: 043-220-0415, 팩스번호: 043-279-0419 / jkrju16@korea.kr / 비공개(6)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4.22. - 6.21.)
문서관리카드과학기술정책과-3266 1/1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발전 추진계획서

제 출 일 : 2024. 04. 30.

제 출 자 : 충청북도·청주시·충북대학교

참고 6

강소특구 종합평가 결과 통보 공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의 진흥
국민 삶의 질 향상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강소특구 종합평가 결과 통보

1. 관련

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특구별 성과평가)

나. 지역과학기술진흥과-1036('24.4.23., 강소특구 종합평가 실시 알림 및 특화발전 추진계획서 제출 요청)

2. 강소특구육성 사업 지원 기간('20년 ~ '24년) 종료를 앞둔, 6개 강소특구에 대해 후속 특화 발전('25년 ~ '29년)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정 연도	강소 특구	종합 평가 결과 (향후 특화발전 지원 타당성)
2019	경기 안산	타당
2019	경남 김해	타당
2019	경남 진주	타당
2019	경남 창원	타당
2019	경북 포항	타당
2019	충북 청주	타당

3. 후속 특화발전 지원이 타당하다고 평가된 강소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연내 수립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신자 경기도지사, 안산시장, 한양대학교총장, 경상남도지사, 김해시장, 진주시장, 창원시장, 인제대학교총장, 경상국립대학교총장, 한국전기연구원원장, 경상북도지사, 포항시장, 군항시과대학교총장,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 충북대학교총장,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주무관 이남현 사무관 정꽃보라 지역과학기술 전결 2024. 6. 11.
진흥과장 고정호

협조자

시행 지역과학기술진흥과-129 (2024. 6. 11.) 접수 과학기술정책과-4277 (2024. 6. 13.)

우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3-6층 (여진동) / <http://www.msit.go.kr>

전화번호 044-202-4749 팩스번호 061-202-6027 / tolate11@korea.kr / 비공개

생각은 창의적으로, 행정은 적극적으로!

1-④ 관계법령 발췌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연구개발특구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477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하고, 매년 특구육성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특구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자금의 조달)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수익사업의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48조(사업)

1. 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2.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3. 특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사업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